

축산악취 집중관리로 개선한다

민원 많은 농가 선정... 악취 개선계획 수립·추진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◆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, 축산업 기반을 악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.

-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,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

* 축산악취 민원 : ('13년) 2,604건 → ('15) 4,323 → ('17) 6,112 → ('18) 6,718

-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,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.

축산악취 농가 집중 점검·개선

◎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,070곳을 선정하여,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,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·추진한다

-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,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,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으며,

* 1,070농가 축종별 현황 : 돼지 947곳, 가금 81곳, 한우 23곳, 젖소 19곳

- 앞으로 1,070 농가 외에도,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점검·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-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, 지자체 합동으로 5.19~6월말까지 추진중인 악취 농가점검을 통해,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, 시설노후화,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파악됐다

점검분야	관리 미흡사례
축산 악취 관리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양돈농가의 경우, 돈사 내 슬러리피트(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)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 및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 발생 ● 한우 및 가금의 경우 퇴비 관리 미흡(퇴비 교반, 깔짚교체 지연 등)으로 악취 발생 ● 축사 등 시설 노후, 과잉사육,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등으로 악취 발생
소독 방역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장, 사무실 입구 등에 신발소독조 미 구비, 소독실 시기록부 미비치, 울타리 설치 미흡, 축사 내외부 청소 미흡 등
안전사고 예방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[전기화재] 시설 노후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전선 노후화, 화재 탐지기 미설치 ● [질식사고] 밀폐시설 작업 전 유해 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 기준 준수 미흡

-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(1~3개월)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,

* 신발소독조 미구비·소독기록부 미비치 등은 즉시 조치, 울타리 미설치 및 축산 악취 저감 시설 미설치 등은 설치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범위 내 기간 부여

– 개선 기한 이후에 추가 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.

- 또한, 일부 지자체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방출,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,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,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.

위반사례	행정처분 내역
◆ ○○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가축분뇨법에 의거 고발 조치
◆ ○○농가는 지역민원 발생에 따라 악취 측정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(기준치 30배 초과) 하여 개선 명령했으나, 미 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 중지 명령 1개월('20.9.7~10.6.)
◆ ○○농가는 축산업 변경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으로 축사 방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축산법에 따라 변경신고(휴업)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
◆ ○○농가는 A농장, B농장 2개의 농장을 운영하면서, A농장의 사육 밀도 초과를 감추기 위해 휴업 중인 B농장(장기 휴업)으로 사육 현황 이력을 거짓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변경신고(휴업) 누락, 과태료 부과 ▷ 축산물 이력제법에 따라 이력제 거짓신고로 과태료 부과

축산농가의 축산법령 준수사항 점검·관리 강화

◎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, 축산관련기관,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, 소독·방역 수칙,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·관리해 나간다.

○ 특히, 폭염·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* 을 본격 가동하여 축산악취, 사육밀도,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
* 축산환경관리원, 축산물품질평가원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으로 9개반(27명) 편성 운영

○ 현장 점검 결과,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하고, 추가 점검을 거쳐서 미 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게 조치하되,
 –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.

◎ 또한,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(축산법, 가전법, 가축분뇨법 등)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,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,

○ 매주 수요일 ‘축산환경 개선의 날’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 함으로써, 축사 내 소독·방역 및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.

